

과로가 사법제도 운영을 유지하는 대가가 될 때

황이링 OSH Link

7월 21일 오후, 타오위안 지방법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한 법원 서기가 8층 판사 휴게실 창문 밖에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다행히 동료들이 제때 이를 알아차리고 즉시 달려가 그를 진정시킨 뒤 경찰과 응급 구조대에 신고했다. 동료들은 그를 무사히 법원 안으로 데려온 후 병원으로 동행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막아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서기관은 장기간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일시적으로 담당하던 사건 기록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정신적 붕괴를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은 사법제도 내 오랜 인력 부족과 과로 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심각한 인력 위기 상황에 놓인 법원 서기 업무

서기는 법원과 검찰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법 행정 인력이다. 그들의 업무는 심문 과정에서 판사, 변호사, 증인 및 당사자들의 진술을 기록하고 법정 기록을 작성·정리하는 업무를 훨씬 넘어선다. 사건 접수, 배당 후 사건 기록 관리, 판결문 및 기타 사법 문서 작성, 소환장 및 법원 결정문 송달, 증거물 보관, 절차 진행 상황 추적, 그리고 소송 절차 종료 후 사건 기록 및 보관 등의 업무까지 맡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법원 서기 인력이 계속 줄어들면서 법원 서기 업무가 심각한 운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전국 법원의 서기 공석 수는 353개로 공석률은 약 10%에 달한다. 다만 법원 서기 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타이베이 지방법원의 공석률은 2024년 6.67%에서 2025년 14.33%로 상승했다. 2025년 타오위안 지방법원의 공석률은 17.08%, 신베이 지방법원은 17.89%, 시린 지방법원은 무려

23.87%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는 각 지방법원을 막론하고 법원 서기 인력 부족의 문제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현직에 있는 직원들은 더 많은 업무량과 압박을 감당해야만 하며, 이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즉, 인력 부족이 심해질수록 과로 문제 역시 심화하고, 일상화된 과로로 인해 인력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사법 정의,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세울 수 없다

『공무원 보호법』에 따라 제정된 『정부 기관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각 직원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월 20시간으로 제한된다. 업무상 필요로 추가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기관은 상급 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 초과근무 수당도 일반적으로 월 40시간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이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서기들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과로 시간에 대한 기록마저 은폐되고 있다. 방대한 사건 양과 부족한 인력이라는 노동환경의 문제를, 노동자의 초과근무, 자기희생 및 책임으로 유지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은 개별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이는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더욱 훼손시키는 결과로 내몰게 된다.

사법의 존재 목적은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사법 정의가 사법 종사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신체적·정신적 고갈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 장시간 근무, 막중한 책임 아래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으면서도, 합리적인 노동시간, 적절한 휴식, 건강 보호에 대한 자신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사법 제도가 어떻게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법원 서기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및 기타 사법제도 운영을 위한 지원 인력들도 증가하는 사건 수, 인력 부족, 지나치게 긴 근무 시간에 직면해 있다. 전체 사법 체계가 노동자의 초과근무와 건강 희생에 의존하여 운영된다면, 노동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건 심리의 질적 수준, 절차의 적정성, 사법 공신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법제도 운영 인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자를 배려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제도 운영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